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도금대출안내

자서일정	기간 : 2025.07.22(화) ~ 2025.07.24(목) ※ 위 기간 이후에는 해당 장소에서 접수 불가하고 대출기관 해당지점에서만 가능하오니 추가접수일 및 장소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접수일 : 25.07.25(금) / 호남새마을금고 도남지점(청사로 85)) 장소 : 제주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 (제주시 도남동 205) 시간 : 09:00 ~ 17:00											
대출대상	제주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 계약금 완납한 계약자 (개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새마을금고 대출 대상자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	<table><tr><th>구분</th><th>기준금리</th><th>가산금리</th><th>대출금리</th></tr><tr><td>COFIX 신규 (6개월변동)</td><td>연 2.63%</td><td>연 1.50% (고정)</td><td>연4.13%</td></tr></table> ※ 위의 예시금리는 '25.07.0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출 실행일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확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 입주지정개시일부터 이자납부 의무는 고객에게 있습니다. (입주지정개시일 이전까지 시행사 지원)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대출금리	COFIX 신규 (6개월변동)	연 2.63%	연 1.50% (고정)	연4.13%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대출금리									
COFIX 신규 (6개월변동)	연 2.63%	연 1.50% (고정)	연4.13%									
대출한도	임대보증금의 49%이내 (중도금 1~5회차) ※ 정부의 정책, 당금고 주택자금대출 규정,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대출기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2027.10.31 中 먼저 도래하는 일											
상환방식 및 이자납부	대출원금 만기 일시상환 / 대출이자 매 1개월 후취로 납부											
부대비용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0.13%(고객 부담) ※보증료 산정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사회배려계층인 경우 보증료의 40%~60%할인 (*별첨자료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2.수입인지세(금고, 고객 각 50%씩 부담) <table><tr><td>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시</td><td>면제</td></tr><tr><td>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시</td><td>35,000원</td></tr><tr><td>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시</td><td>75,000원</td></tr></table> ※보증료 및 수입인지세 납부 계좌는 대출 심사 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시	면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시	35,000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시	75,000원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시	면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시	35,000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시	75,000원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도금대출안내

-별첨자료 : 보증료 할인대상-

구분	할인대상	필요서류	보증료 할인율
저소득가구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안된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확인 서류)	40%
다자녀가구	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고령자가구 및 노인부양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2.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안된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확인 서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2.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의사상자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의사상자증 사본 등	60%
한부모가족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또는 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khug.or.kr)